

1.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구체화(안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규정
나.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른 인용법령 및 용어 변경(안 제23조의6, 별표3 및 별표5의2)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인용 근거 법령 및 조문 등 변경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리(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4 및 제44조의12)

법률 제20119호(2025.1.24. 시행)에서 기존의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가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라. 곰 사육 가능 시설(안 제44조의26)

곰 사육이 금지됨(‘26~)에 따라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

마.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및 등록(안 제44조의27 및 제44조의28)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시 필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

바.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제44조의28 [별지 제40호의17] 및 [별지 제40호의18])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을 말한다.

제23조의6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제31조제4항 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를 각각 제31조의4 및 제31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3)제1항 중 “법 제23조제5항”을 “법 제2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의12제2항제3호 중 “법 제23조제5항”을 “법 제2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의26부터 제44조의2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6(곰 사육 가능 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4조의27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
3.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5. 그 밖에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그 밖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

제44조의28(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

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요건: 법 제16조의2제1항, 이 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2. 인력요건: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갖추는 것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의2 비고 제4호 라목의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마목의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7서식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별지 제40호의9서식, 제40호의17서식 및 별지 제40호의1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 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2.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보 호 시설 3.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4. (생 략)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 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을 말한다.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 른 동물치료소 4.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u>법 제23조제6항</u>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u>법 제23조제7항</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u>제31조의3</u>(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법 제23조제5항</u>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u>제31조의4</u> (생략)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	④ ----- ----- ----- <u>법 제23조제5항</u>----- ----- ----- ----- -----.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 <u>법 제23조제6항</u>----- ----- -----. 1. ~ 3.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4</u>(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 ----- -- <u>법 제23조의3제3항</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3</u> (현행 제31조의4와 같음)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
--	--

병 관리)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
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 략)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
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
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
영

③ ~ ⑥ (생 략)

<신 설>

병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법 제23조의3제3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6(곰 사육 가능 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서식지외보
전기관

2. 법 제34조의27에 따른 사육
곰 보호시설

3.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신 설>

<신 설>

따른 동물원

5. 그 밖에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
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
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립생태원
3. 그 밖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

제44조의28(사육곰 보호시설의 등
록) 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요건: 법 제16조의2제1
항, 이 규칙 제23조의7 및 별

표 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2. 인력요건: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갖추어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

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내용	수출국	품명(학명)	중량(kg)	수송방법	도착항	도착예정일
----	-----	--------	--------	------	-----	-------

수입목적			
용도			
관리방법		관리장소	
사용기간		사용 후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주요임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6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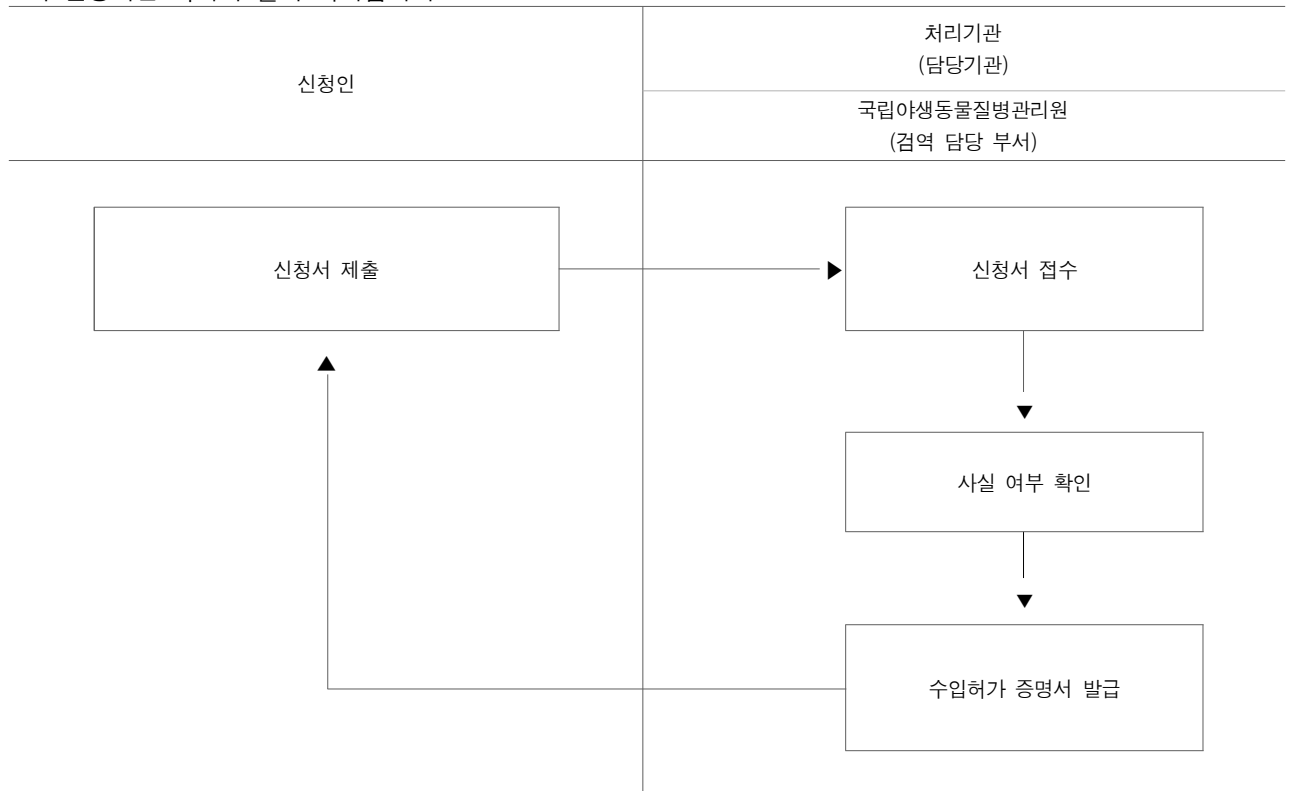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시험·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안전관리계획서 4. 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① 신청인: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② 내용: 수출국가, 품명(학명), 종량, 수송방법(선박, 비행기 등), 도착항(국내도착항) 등을 적습니다.
- ③ 수입목적: 수입목적 등을 적습니다.
- ④ 용도: 시험·연구조사,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⑤ 관리방법: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방법을 적습니다.
- ⑥ 관리장소: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장소를 적습니다.
- ⑦ 사용기간: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⑧ 사용 후 처리방법: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용 후 처리방법(소각·매물 등)을 적습니다.
- ⑨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주요임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입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IMPORT QUARANTINE)

※ 뒷쪽의 첨부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한
			뒤쪽 참조
① 신고번호		② 신고일 (Date)	
③ 신고기관		④ 선하증권번호 (B/L No.)	
⑤ 도착일 (Date of arrival)		⑥ 선박(항공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⑦ 수입화물주 (Consignee)	성명 (Name) 주소 (Address)	업체명 (Company name)	
⑧ 수출자 (Consignor)	성명 (Name) 주소 (Address)	⑨ 수출국 (Country of export)	
⑩ 품명(학명) (Species or Article name)		⑪ 모델 · 규격 (Sex, Age, color, etc.)	
⑫ 수량 (Number of head)		⑬ 금액 (Total cost)	
⑭ 도착항 (Port of arrival)		⑮ 생산국 (Country of production)	
⑯ 선적항 (Port of shipping)		⑰ 선적일 (Date of shipping)	
⑱ 담당자			

위와 같이 수입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wild animal(s).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

Address: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of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첨부서류	1. 지정검역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부분(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 수입 허가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입·반입) 허가증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수입·반입) 허가서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수입등) 허가서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수입·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8 참조	

작성요령

- ① 신고번호: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신고일: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는 일자를 적습니다.
- ③ 신고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적습니다.
- ④ B/L번호: 선하증권(B/L)번호를 적습니다.(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 ⑤ 입항일: 입항일자를 적습니다.
- ⑥ 선(기)명: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⑦ 수입화물주: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화물주명 또는 업체명을 적습니다.
- ⑧ 수출자: 수출국에서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발송한 화물주명 또는 업체명을 적습니다.
- ⑨ 수출국: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 ⑩ 품명(학명):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품명(학명)을 적습니다.
- ⑪ 모델·규격: 야생동물의 경우 해당 야생동물의 성별, 연령, 털색 등을 적습니다.
- ⑫ 수량: 해당 야생동물의 마리수(암수를 구분합니다) 또는 물건의 수량을 적습니다.
- ⑬ 금액: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금액(US\$)을 적습니다.
- ⑭ 도착항: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공항을 포함합니다)명을 적습니다.
- ⑮ 생산국: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생산된 국가명을 적습니다.
- ⑯ 선적항: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선적된 항구(공항을 포함합니다)명을 적습니다.
- ⑰ 선적일: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선적된 일자를 적습니다.
- ⑱ 담당자: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 리 질 차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사육곰 목록	개체번호	보통명(학명)	성별	원산지	출생(수입)일	비고
사육시설 및 사육관리	시설규모 (동, 면적(㎡))					
	일반사육관리	[] 물과 음식 제공 [] 적당한 환경 제공 [] 동물 건강관리 [] 행동 관리 []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 행정				
	탈출방지방안					
	폐사처리방안					
	기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8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소재지란에는 사육곰 보호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2. 사육곰 목록란에 적을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3. 원산지에는 수입곰일 경우 '수입곰'으로, 자체증식개체인 경우 '자체증식개체(한국)'으로 작성합니다.

지정번호 제 호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				
상호(성명)				
연락처				
보호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동, 면적(m ²))				
사육하는 사육곰 목록 및 시설내역	학명	보통명	수량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8제3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